

「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9. 2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### 2. 제안이유

-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의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(안 제5조)
-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·점검(안 제6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」 제3조에서 지자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14조에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의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정의)에서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- 안 제5조(지원사업)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< **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** >

1.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
2.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관리 지원
3.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
4.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, 급식비, 간식비, 차량 임차료 등
5.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
6. 통역·번역 비용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안 제6조(지도·점검)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농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구 분	계절근로자(C-4, E-8)
담당기관	주관 : 법무부 협조 : 농림축산식품부, 기초자치단체
공 통 점	(목 적) 인력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 <b>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</b>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(내국인 구인노력)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<b>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기간 부여</b>
개 념	농번기에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<b>단기간(최대 8개월)</b> 외국인근로자 합법 고용
신청주체	<b>기초자치단체(시·군) → 관할 출입국사무소(법무부)</b>
추진절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필요성 검토 및 고용 희망 농가 조사(시·군)</li> <li>2. 운영계획 수립(시·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급* 방안, 인프라 확보 여부 등</li> <li>* 해외입국 : 외국지자체와 MOU 체결, 결혼이민자의 추천, 외국국적동포의 추천</li> <li>* 국내채류 :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상시운영 (방문동거, 유학생, 구직 비자 등)</li> </ul> </li> <li>3. 사전절차 이행(시·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국인 구인 노력, 관내 주민 사전 동의 등</li> </ul> </li> <li>4. 도입 신청(시·군)</li> <li>5. 지자체 선정 및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(법무부)</li> <li>6. 적정 주거 환경 제공 여부 점검 후 계절근로자 고용주 배정(시·군 → 농가)</li> <li>7. 계절근로자제 외국인근로자 근로 시작</li> </ol>
자격요건	<p>&lt;기초자치단체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내 주민 사전 동의</li> <li>2. 입·출국 인솔, 안내, 행정절차 대행, 상담, 통역 인원 확보</li> </ol> <p>&lt;고용주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 등 부적합시설 제공 금지</li> <li>-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</li> <li>- 숙소(침실, 화장실 포함) 내부에 잠금장치가 있을 것</li> <li>- 취사 도구 및 침구류,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</li> </ul> </li> <li>2.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최저임금법 준수</li> </ol>